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로붙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6년 7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노 재 근



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996. 7. .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1996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 정 이 유

- 1993년부터 중앙(내무부)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1군 1명품 육성사업이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
- 1996년도부터 시단위까지 본사업을 확대하여 육성·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기금의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수입금, 기타 잡수입으로 하며
- 나. 기금의 지원범위는 명품의 상품성 제고사업, 고부가 가치화 사업, 가공공장 운영관리사업, 유통기능 제고사업,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함.
- 다. 기금의 용자 대상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
- 라. 기금의 용자 한도액은 농특산품 및 민·공예품 육성사업의 경우 개소(사업장)당 1억원 이내, 향토 전통음식 육성사업은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하며

마. 기타자금의 관리운용방법, 운용심의위원회 구성등 기금
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3. 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품 및 민·공예품, 향토
전통음식을 명품으로 선정, 중점육성·지원하여 일류 상품
화

하르로서 농가소득증대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
도록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을 설치, 운용하려는 것으로

기금의 일부는 중앙에서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기 중앙으로
부터 준칙까지 시달되어 입법 예고한 사안으로 검토결과
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